

# 2025년 이노테크 기업육성사업 기술·인증(시험)분야 컨설팅 및 기술지도 지원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경남진주강소특구에서는 G-Aero 딥테크 기술 육성을 위한 첨단산업의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『2025년 이노테크 기업육성사업 기술·인증(시험)분야 컨설팅 및 기술지도 지원프로그램』의 수혜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업 및 관계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\*(주관)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(참여) 한국산업기술시험원

2025년 7월 28일  
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

## ① 지원개요

- 사업명: 2025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
- 사업목적: 특화(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) 및 연계 분야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촉진
- 사업내용: 진주강소특구 내 소재 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기술·인증(시험)분야 컨설팅 지원

## ② 지원내용

- 사업기간: 협약일로부터 ~ 2025년 12월 31일
- 지원방식: 수혜기업 컨설팅, 기술지도 비용 직접지원
  - 지급방식: 지원기관에서 전문가 자문 제공하는 기업/기관 등으로 최종 서류 검토 후 직접 사업비 지급
- 지원대상: 특화(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) 및 연계 분야 기업 단독 혹은 경상국립대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

### 지원 조건(2가지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)

- ①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특화 분야(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) 기업
- ② 진주시 소재 기업 중 특화 분야 및 연계 분야 기업(기계, 조선, 자동차, IT, RT, BT, NT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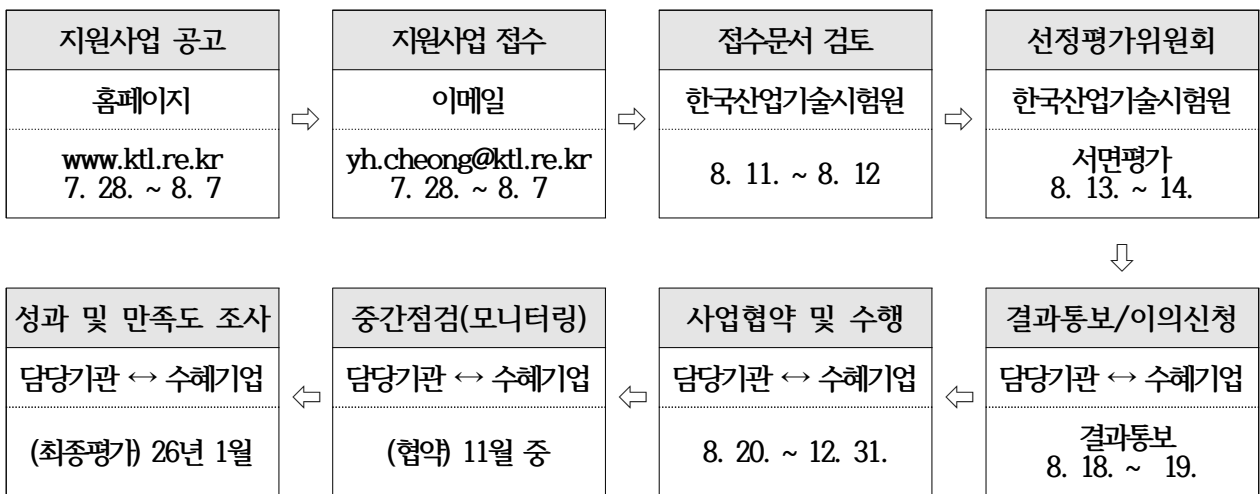
## ○ 지원분야

구분	세부내용	지원금액	지원 수
컨설팅	• 특화분야의 인증·시험평가 및 기타 관련 컨설팅 지도 - 시험 비용(KTL시험 비용) 및 전문가 자문지원 - 단, 시험비용의 경우에는 수혜기업이 부가세 부담	최대 2,000천원	1개사
기술지도	• 특화(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·소재)분야 관련 분석,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업 맞춤형 지도 - 전문가 자문지원	최대 800천원 (1회 400천원 * 2건)	5개사

- 지원 제외대상
  -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5호)의 “제14조(사전검토)”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 제외 대상으로 함
- 기타사항
  - 민간부담금: 해당사항 없음(단, 부가세 전액 기업 부담)
  -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: 신청기업에 귀속
    - \*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름
  - 기술료 징수: 해당 없음

### ③ 신청방법 및 추진절차

- 공고기간: 2025. 7. 28.(월) ~ 8. 7.(목)
- 접수기간: 2025. 7. 28.(월) ~ 8. 7.(목), 18:00까지
- 신청방법: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홈페이지(www.ktl.re.kr)를 통해 공고문 확인 후 해당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하여 이메일 접수
- 접수방법: 담당자 이메일 송부(yh.cheong@ktl.re.kr)
  - 메일 제목: (기업명)2025년 이노테크 기업육성사업 (기술지도 또는 컨설팅 中 1) 프로그램 신청
- 지원사업 추진절차



\* 상기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④ 평가방법 및 기준

- 평가방법
  - 평가일정: ③ 추진절차 일정 참고
  - 서류검토: 제출서류 기반으로 사전 검토
  - 접수문서 검토: 제출서류 및 추가서류 기반 점검
  - 선정평가위원회: 제출 서류 기반으로 서면평가 진행

- ※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'지원가능과제',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'지원제외'로 분류함
- ※ '지원 가능 과제'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※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 제외 또는 협약 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, 예산범위 내에서 '지원가능 과제'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
- ※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,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·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

○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

-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

검토사항	내용
공고 내용과의 부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청 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</li> </ul>
기 개발 또는 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. 다만,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할 수 있으며,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</li> <li>•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,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</li> <li>•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"중단"이나 "극히 불량(불성실수행)"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</li> </ul>
의무사항 불이행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청기업, 공동연구개발기관, 총괄(과제)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,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계획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</li> </ul>
참여제한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신청기업, 신청기업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총괄(과제)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함을 원칙으로 함</li> </ul>
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업, 신청기업의 장, 공동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, 총괄(과제)책임자 등을 아래의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. 단,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않음 (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)</li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업의 부도 또는 휴폐업</li> <li>2.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</li> </ol> </ul>

검토사항	내용
	<p>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</p> <p>3.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경우(단,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</p> <p>4. 파산회생절차·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</p> <p>5.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'BBB'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"BBB" 이상인 경우 또는 '외국인투자 촉진법'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). 이때,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.</p> <p>※ 상기의 신용등급 'BBB'는 'BBB+', 'BBB', 'BBB-'를 모두 포함함</p> <p>-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「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 등)를 통한 신규 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(RCPS)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</p> <p>6.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</p> <p>7.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</p>

○ 선정 평가항목

구분	평가항목	점수
추진계획 타당성	•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(15점)	30
	• 과제 목표의 명확성 및 추진 방안의 타당성(15점)	
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	• 지원의 시급성 및 필요성(20점)	40
	•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(20점)	
지원 타당성 및 효과성	• 과제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(15점)	30
	•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(15점)	
합 계		100

※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5 제출서류

-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(PDF) 형태로 제출

구분	제출서류 목록	비 고
필수	①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	공고문 내 신청서(서식 1호)
	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	신청기업 제출
	③ 중소기업확인서	발급: 중소기업확인서(sminfo.mss.go.kr)
	④ 납세증명서	국세 및 지방세 체납 확인용
	⑤ 최근 3년(2022-2024년) 재무제표	*일반과세자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
	⑥ 의무이행 서약서	신청기업(서식 2호)
	⑦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	신청기업(서식 3호)

6 유의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(평가결과는 수혜기업에 개별 통보 예정)
- 제출서류가 허위,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
  -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
  - 사업에 부정적 행위 발생 시 지원예산 전액 환수 조치
- 지원규모는 선정평가에 따라 전체 사업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으며, 지원 프로그램 완료(결과보고서 제출) 후 지급원칙
- 선정 미달의 경우 상시접수로 전환 및 홈페이지 추가 공고 예정
- 선정평가에 의해 부적합 판정 시, 지원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
- 신청서 접수는 접수 마감일(3신청방법 및 추진절차)까지 접수하며,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불가
- 부가세 및 각종 세금은 지원대상 아님

7 문의처

담당자명	전화번호	이메일	지원기관명
정영훈 책임연구원 (한국산업기술시험원)	055-791-3577	yh.cheong@ktl.re.kr	한국산업기술시험원